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의 특이사항

Q :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은 스스로 온라인에서 청약하는 상품으로 다이렉트 인터넷보험 (www.direct.hanwhalife.com)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대면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Q : 이 보험에 부가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은 어떤 특약인가요?

A :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 약관 본문 및 상품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자격요건

가. 보험종류

-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나. 보험기간

- 주계약 : 1년만기

다.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납입기간 : 일시납
- 납입주기 : 일시납

라. 가입나이

- 만 19세 ~ 65세

마. 가입한도 및 건강진단 여부

- 가입한도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건강진단 여부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가. 상품의 구성

주계약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제도성특약	+ 단체취급특약(K1.6) + 장애인전용 세제전환특약(K1.2)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7) + 표준하체인수특약(K3.8)

나.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5만원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5만원
재해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50만원
재해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25만원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5만원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철심제거 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25만원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약관 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약관 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약관 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약관 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약관 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약관 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약관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查)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②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 등

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가. 보장부분 적용이율

Q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Q : 이 상품에 적용한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얼마입니까?

A :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에 사용한 적용이율은 2.5%입니다.

나.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무배당 예정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발생률

나이	남 자	여 자
20세	0.004673	0.004297
40세	0.022818	0.017816
60세	0.029642	0.028009

■ 무배당 예정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발생률

나이	남 자	여 자
20세	0.014304	0.013548
40세	0.016054	0.014918
60세	0.012294	0.018786

■ 무배당 예정 재해로 인한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수술률(최초 1회한)

나이	남 자	여 자
20세	0.001692	0.000352
40세	0.000823	0.000313
60세	0.000926	0.000994

■ 무배당 예정 재해로 인한 아킬레스힘줄 손상 수술률(최초 1회한)

나이	남 자	여 자
20세	0.000102	0.000014
40세	0.000358	0.000072
60세	0.000146	0.000027

■ 무배당 예정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률

나이	남 자	여 자
20세	0.0052	0.00163
40세	0.003039	0.001394
60세	0.002665	0.002578

■ 무배당 예정 급여 재해골절II(치아파절 제외) 철심제거술 발생률(연간 1회한)

나이	남 자	여 자
20세	0.004149	0.001060
40세	0.003100	0.001509
60세	0.003405	0.005373

다.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이 보험의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50만원, 40세, 1년만기, 일시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86	2,498	61.1%	2,737	1,673	61.1%
6개월	4,086	1,665	40.7%	2,737	1,115	40.7%
9개월	4,086	833	20.3%	2,737	558	20.3%
1년	4,086	-	0.0%	2,737	-	0.0%

-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2.50%입니다.
3.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4.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으로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보험금)이 없습니다.

7.

보험가격지수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보험가격지수는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참조순보험료 총액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평균사업비 총액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상품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남자	여자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1년만기	일시납	78.4%	72.5%	50만원